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 례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_ 1

- I-1.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
- I-2. 병원 진료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 6
- I-3.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3
- I-4.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적법성 여부 16
- I-5. 개인정보 수집과 약관 19

II. 개인정보의 제공 _ 25

- II-1.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27
- II-2. 계약 체결·이행 등 비동의 적법 근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 제공 가능 여부 30
- II-3. 자동차 정비(수리)이력정보의 제공 인정 여부 34
- II-4. 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의 열람 허용 여부 39
- II-5. 홈페이지등을 통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공유의 적법성 여부 43
- II-6. 온라인 화상회의 등에서의 얼굴, 음성, 발언 등 공유의 적법성 여부 49
- II-7.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횟수의 적법성 여부 51
- II-8.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간 누수 분쟁 시 개인정보 제공 54
- II-9.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 게시 57
- II-10. 참석자 현황 파악을 위한 출석표 회람 64
- II-11.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블랙박스 촬영 영상 방송 제3자 제공 위반 여부 68
- II-12.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건 해결용 CCTV 영상 제공 71

III. 개인정보의 파기 _ 77

- III-1.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시점의 적법성 여부 79
- III-2.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에 따른 파기 또는 보관 방법의 적법성 여부 81

I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_ 85
IV-1.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시 법적 근거와 기준	87
IV-2. 서비스 제공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	93
V.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	_ 95
V-1. 수집된 고유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 해당 여부	97
V-2. 법 제2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4조와의 관계	100
VI. 민감정보 처리 제한	_ 103
VI-1.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105
VII. 가명정보의 처리 등	_ 109
VII-1.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법령 해석 문제	111
VII-2.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대상	116
VII-3.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발생 여부(가명정보 처리 시 신고의무에 대한 법 제28조의7과 제39조의4 간의 해석 문제)	119
VII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_ 123
VIII-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5
VIII-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128
VIII-3.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 문제	134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제 I-1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질의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방문 자동차에 부착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아파트 방문자의 전화번호 및 방문 동·호수, 방문일시, 방문목적 등을 적어 방문 자동차 앞 또는 자동차 내부에 두도록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 되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문제 됨

2.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방문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으나,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부착도록 하는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시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 처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방문자의 입·출입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 제2조에 근거해,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례 |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 관련 판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이요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3. 10. 2015도8766).

또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 등에 근거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게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외부 차량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의 성명, 기본적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장소, 출입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2022년, 91-95쪽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방문자의 성명은 수집하지 않고, 주차관리에 필요한 방문목적, 일시, 장소, 연락처 등의 정보만을 수집하므로 타당한 수준의 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정보를 방문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도록 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익명 또는 가명처리가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거나, 경비실 내에 비치된 방문록 작성 등을 통해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9호, 제18조, 제19조, 제64조, 「경비업법」 제2조

주제 I-2

병원 진료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

1. 질의 요지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내원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연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병원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안내데스크 등에서 진료자 대기명단에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 진료실 입장 후 펜으로 간단히 지우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비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됨

2. 답변

병원이 환자관리를 위해 연명부에 내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 안내데스크에 연명부를 펼쳐놓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정보주체에게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인 본인 외에 다른 내원자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처리의 근거가 없거나 정보주체가 기재 예정인 빈칸을 제외하고, 이미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의 내용이 안내 데스크를 오가는 다른 내원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된 상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되도록 연명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 항목을 충분히 알린 후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명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연명부 상하단 여백에 제공받는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 업무 효율을 위해 연명부 회람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방법과 절차로 진행 바랍니다.

① 보호조치 : 연명부 상단에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문구를 삽입
 ② 작성목적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를 기재
 ③ 정보주체 동의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칸 마련

○○○ 주민의견 수렴 연명부

※ 본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연명부는 우리 단지 도색 색상 의사결정에 반영할 목적임
 본 연명부는 ○○○ 시·군·구에 우리 단지의 지원요구를 위해 제공 예정임

연번	성명	동 호수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3. 이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진료 시 「의료법」 제22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 목적으로(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진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진료과목 등과 같은 진료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편)」, 2020년, 100쪽 참조). 다만, 연락처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진료 예약이나 진단 결과의 통보 등 진료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 2017.1., 56-57쪽 참조).

참고 방문에 의한 진료 신청 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 다만, 진료목적 이외의 최신 의학정보, 각종 건강행사 등 의료기관이 홍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0.12., 80쪽 참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명	수집항목	법률 근거
진료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진료카드번호) 등	「의료법」 제22조
선택진료 신청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 지원항목 등	「의료법」 제46조
진료기록부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日時)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조산기록부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 포함),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 수와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간호기록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환자명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의료기관은 진료실에 입장할 환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목적으로 대기자 명단에 환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 업무의 편리성보다는 환자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법 제3조 제6항). 따라서, 대기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대기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되도록 그러한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식(예: 개별 대기자로부터 면지 등을 통해 별개의 인적사항을 수집한 후 성명 등 개인

정보의 일부가 마스킹 된 형태로 내부 전광판에 표시하거나, 연명부에 기재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상단에 기재된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안전 조치 이행 등)을 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의료기관 개인정보 상담사례』, 9쪽 참조).

만약 병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 연명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한 후 명시적 동의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표시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요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중요한 표시내용에 해당¹⁾)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연명부 작성 시 이미 기재된 타인의 개인정보에 추가하여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 공유하게 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환자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타인의 개인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기 보다는 목적 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7조에서 요구한 바에 따른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비동의 적법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공유를 포함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 목적 외 제공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수집 시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경우, 제공 받은 자가 법 제19조에 근거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중요한 표시내용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요표시를 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아니 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부득이하게 연명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가능하다면, 해당 연명부 상하단 여백에 제공받는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병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에 의해 연명부에 개인정보가 작성 및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원자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연명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되도록 다른 대기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또는 가명처리 하는 것(예: 개인정보가 기재된 상하단 기재부분을 가리거나 이미 진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당 내용을 지우는 방식 등)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남양주시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슬라이더’는 다중이용 시설 방문 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가려지도록 고안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슬라이더(예시)〉



다만, ‘개인정보 침해’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라도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금지규정을 두면서 금지의무의 주체로 ‘개인정보처리자’(법 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법 제1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법 제59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71조, 제72조에서 위 각 주체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327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병원 측이 안내데스크에 마련한 연명부에 후속 대기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 일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판례 정보주체의 동의와 정보제공 및 공개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판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또는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 및 그 보호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진료 신청 접수 업무담당자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업체에 진료 신청 업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관련 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처리하고, 안전한 관리, 교육 및 감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0.12., 82쪽 참조).

참고 개인정보의 침해/유출과 노출/제3자 제공 비교

-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
- 유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예: 해킹, 고의유출, 업무과실, 불법매매 등)
- 노출: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인·조회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공개 또는 방치된 상태
 1. 홈페이지 운영·관리자 부주의에 의한 노출
 2.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3. 홈페이지 설계 및 개발 오류에 의한 노출
 4.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2차 노출
-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주제 I-3**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1. 질의 요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각종 동의서를 작성할 때,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도 체크란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가 필요한 선택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만 체크란을 만들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시 필수정보와 함께 선택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체크하도록 하거나, 온라인 화면에서 확인 버튼만 누르도록 구현되어 있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구현할 때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을 때마다 처리 프로세스가 달리 구현되어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수집 동의로 처리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대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구분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수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도 각각의 정보에 대하여 체크란을 만들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의 내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3.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4.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를 처리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항목, 목적 및 그 처리 근거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따로 동의를 받도록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필수동의 항목으로, ‘해당 서비스의 추가적 기능 또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선택동의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동의 항목은 서비스목적별로 나누어 각각의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를 구성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선택동의 항목은 서비스목적에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1항·제7항,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 3.)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의 변경(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제17조 제3항)
-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제22조 제4항)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법정 대리인) (제22조 제6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및 고지사항의 변경(제39조의3 제1항)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1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제19조 제1호)
- 민감정보의 처리(제23조 제1항 제1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제1항 제2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제2호-제6호)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제1항 제2호)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2항 제2호-제9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제19조 제2호)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3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4조 제1항 제2호)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제28조의2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제39조의3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법정대리인) (제39조의3 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처리위탁·보관하려는 경우(제39조의12 제2항)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제39조의12 제5항)

주제 I-4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적법성 여부

1. 질의 요지

웹에서 임시로 만들어지는 개인정보파일인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 범위에 있는지?

질의 배경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쿠키는 여러 개의 쿠키를 종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광고 등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유

‘쿠키’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 이용자가 본 내용, 상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 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IP주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정보파일을 말합니다. 쿠키는 ‘온라인 행태정보’²⁾에 해당하므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는 관계없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집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쿠키)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정하여 정보

2) ‘온라인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 정보를 말함(온라인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2.), 1쪽).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할 때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쿠키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쿠키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특정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쿠키 내용을 종합하거나, 쿠키 정보와 다른 유형의 정보를 종합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록 쿠키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인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단말기 번호, IP주소, 회원번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쿠키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쿠키가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홍보목적 등으로 활용할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참고 EU의 쿠키 정책

- 쿠키의 개념 및 기능
 - 쿠키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때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웹사이트가 저장하는 작은 텍스트 파일임.
 - 쿠키는 같은 사이트를 방문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사이트 방문 경험에 대한 익명 통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음. 그렇지만, 쿠키는 웹사이트가 너무나 쉽게 개인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이용자를 타겟으로 광고를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개별방문기록을 웹사이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
 - EU는 2011년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들이 방문한 웹사이트가 어떤 쿠키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원하는 경우 쿠키에 대하여 opt-out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음.
 - GDPR은 전문(recital) 30에서 ‘쿠키는 온라인 식별자로서 서버가 수집하는 고유식별자 및 그 밖의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사람의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식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로서 보호하고 있음. 그러므로 기업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이용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쿠키의 종류

보유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션 쿠키(Session cookies) :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브라우저를 닫거나 세션이 끝날 때마다 만료됨. 2. 영구 쿠키(Persistent cookies) : 만료 날짜가 포함된 쿠키로서 만료 기간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브라우저가 삭제하기 전까지 HDD에 남아 있는 모든 쿠키를 말함. ePrivacy Directive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조치하지 않는 한 더 오래 이용자의 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음.
쿠키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First-party) 쿠키 :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기기에 직접 설치하는 쿠키로서 해당 웹사이트만 읽을 수 있음. 2. 제3자(Third-party) 쿠키 :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가 아닌, 광고주 또는 분석 시스템 등 제3자가 이용자의 기기에 설치하는 쿠키를 말함(예: 이용자가 A라는 웹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제휴사인 B사의 쿠키가 설치되는 경우).
쿠키 사용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수 쿠키(Strictly necessary cookies) :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안전한 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쿠키를 말함. 일반적으로 당사자 세션 쿠키이고, 이용자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쿠키의 기능 및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함(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쿠키). 2. 설정 쿠키(Preferences cookies) : '기능성 쿠키'(functionality cookies)라고도 불리는 쿠키로서 웹사이트 이용자가 이전에 선택한 언어, 지역,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등의 항목을 기억하여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기능 등을 제공함. 3. 통계 쿠키(Statistics cookies) : '성능 쿠키'(performance cookies)라고도 불리는 쿠키로서 방문한 페이지와 클릭한 링크와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은 웹사이트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이 쿠키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고, 정보를 모아 익명화함. 방문한 웹사이트의 소유자가 쿠키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한 제3자 분석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쿠키를 포함함. 4. 마케팅 쿠키(Marketing cookies) :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가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보다 관련 있는 광고를 전달하도록 돕거나 광고 노출 시간을 제한함. 다른 기업 및 광고주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음. 이 쿠키는 영구 쿠키로서 언제나 제3자가 설정하는 쿠키임.

- 쿠키를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1. 필수 쿠키를 제외한 쿠키를 사용하기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쿠키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각 쿠키가 추적하는 데이터와 그 목적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쉬운 언어로 제공해야 함.
3. 이용자의 동의를 기록하고 보관할 것.
4. 이용자가 특정 쿠키 사용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이용자가 처음에 동의한 것과 같이 자신의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처 : Cookies, the GDPR, and the ePrivacy Directive(<https://gdpr.eu/cookies/>)

주제 I-5

개인정보 수집과 약관

1. 질의 요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약관에 관한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등이 기재된 약관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동의관련 법 의무사항은 약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혼란 발생(동의 시 약관의 효력을 지나치게 인정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약관의 공개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과의 구별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명확한 법 해석 필요

2. 답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법 제6조), 타법에서 명시적으로 동의절차에 갈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예: 「위치정보법」 제18조 및 제19조 등)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에게 약관에 관한 동의 외에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법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는 등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약관에 의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은 약관법에 따를 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법과 절차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치정보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약관에 필수항목을 기재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특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약관에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약관에 규정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약관법」 제6조),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법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는 등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약관에 의한 방식보다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약관법 제2조 제1호), 「위치정보법」 제18조 및 제19조 등과 같이 개별법에서 약관에 필수항목을 기재한 후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른 방법과 절차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근거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비교·확인할 수 있게 한 자율규제 장치의 일종으로, 「위치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처리위탁·보관 시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공개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개별법이나 개별조문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적법한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특히 동의를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 세부사항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그러나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한 번의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정보주체의 선택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50쪽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외 주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 심사에서 다음과 같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불공정 약관 조항**
-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의제 조항
 -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 ③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 ④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 ⑤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 ⑦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 ⑧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 ⑨ 부당한 환불 조항
 - ⑩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이 중 ④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과 ⑤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조항 및 ⑩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은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법」 제6조).

불공정 약관(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 조항(예시)

<A사 계정 만들기 화면>

아래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A사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요 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을 설명한 A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A사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아래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Google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요 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을 설명한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A사 서비스를 사용할 때 A사 서비스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데이터

- Google 계정을 설정할 때 제공하신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가 저장됩니다.
- 사용자가 A사 서비스 지도에서 식당을 검색하거나 YouTube에서 동영상 시청할 때 A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활동에 관한 정보(예: 시청한 동영상, 기기 ID, IP 주소, 쿠키 데이터, 위치)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A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A사 서비스 (예: 광고, 애널리틱스, A사 서비스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앱 또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에 설명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 **동의**

A사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와 사용 방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 약관 시정 보도자료, 2019.03.14. 참조).

이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약관법」이 정한 바에 따른 동의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른 동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7항).

한편,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8조).

참고 「위치정보법」에 따른 이용약관 작성 시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 개념: '이용약관'이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함
- 위치정보 수집 시 약관동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위치정보법」 제18조)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6.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시행령 제22조】

- 위치정보 이용 시 약관동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통보에 관한사항【시행령 제23조】

- 이용약관의 공개의무 대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이용약관 내용: 이용약관에는 사업자의 상호 및 연락처,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이용요금,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동의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과 관련된 조건, 위치정보관리책임자(임원

이상)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에 관한 내용, 위치정보법상의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주의: 「위치정보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함
- 이용약관 변경명령: 약관내용이 개인위치정보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음(위치정보법 해설서, 2022. 6., 68-69쪽 참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59조 제2호, 제3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7항, 약관법 제2조 제1호, 제6조,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

II

개인정보의 제공

주제 II-1**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1. 질의 요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수집한 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예: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쿱/택배 등으로 배송할 경우) 위탁인지, 추가적 제공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함
이용 또는 제공인지와 추가적 이용·제공인지, 위탁인지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다름에도 현장에서 혼동되어 처리되고 있는 문제 발생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가 적법하게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추가적 이용·제공을 하면 정보주체가 예측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유

현행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에 따를 때, 상품 판매자의 배송자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 이전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합리적 관련성의 기준이 되는 ‘당초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 해당 수집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4-95쪽 참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한편, 기존의 관행이나 정황상 위탁으로 처리하던 것을 수탁자 관리 감독 등의 의무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편리성만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 이용·제공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추가적 이용·제공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만 추가적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6쪽)

따라서, 상품 판매자가 상품 배송을 위하여 수취인인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우편, 택배 등 배송업체에 이전하는 것은 판매자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고 배송업체는 배송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이는 개인정보취급 업무 위탁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2020년, 27쪽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법의 해석상으로는 업무위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책적 판단 아래 사안별 개인정보 처리 유형(예: 위수탁, 제3자 제공 등)을 정한 경우 각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법 의무사항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판례 법률요건으로서의 '관련성'을 인정한 판례

-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대법원 2020. 2. 13. 선고2019도14341,2019전도130 병합 판결)
-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2항,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주제Ⅱ-2

계약 체결·이행 등 비동의 적법 근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 제공 가능 여부

1. 질의 요지

계약 체결·이행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사유로 수집된 개인정보도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가적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법 제17조 제1항은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15조 제1항 제1호~3호, 제5호의 목적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 제4항은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제3자 제공이 가능함을 규정하여, 현장에서 업무 처리에 혼선 발생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이하 ‘계약 체결·이행 등의 목적’이라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3항, 영 제14조의2). 한편, 계약 체결·이행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외에는 비동의 적법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체결·이행 등의 목적으로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가적인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을 금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이나 비효율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4쪽), 법 개정을 통해 법 제15조 제3항과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때는, 동일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과 제공기준 비교표(「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11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4호)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과 제공기준의 비교〉

기준	수집·이용(제15조)	제공(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가능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 범위 내에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영 제14조의2 제1항).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영 제14조의2 제2항).

〈추가적 이용·제공의 판단 근거 마련을 위한 4가지 고려사항〉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주제Ⅱ-3

자동차 정비(수리)이력정보의 제공 인정 여부

1. 질의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고객과 매매상담을 할 때, 매매 대상 중고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해당 중고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신이 정비하고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알려주어도 되는지?

질의 배경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빈번히 요구받고 있는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중고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중고자동차매매를 위하여 해당 중고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정비업소가 고객에게 정비 중인 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자동차 정비(수리)이력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동차의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그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수 가능성’ 외에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비(수리)이력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고객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어 고객 스스로 해당 자동차의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또는 「자동차 365」(<https://www.car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인터넷사이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자동차소유자 및 그 밖의 자에게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공하는 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이력관리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소유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의 요건 및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요건 및 범위〉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 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함) 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의 범위 -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함)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함) 사. 그 밖에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자동차소유자 이외의 자는 ①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사업장에 제시된 것으로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정보, ③ 자동차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구분되어 각각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에 따른 저장권등록 진수 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 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②	가.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에 따른 저장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자동차판매업자가 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② 및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 검사의 이력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비(수리)이력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53조의2

판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정보의 취득 및 해당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이 모두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2016고합538, 558(병합)).

주제 II-4

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의 열람 허용 여부

1. 질의 요지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굽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차량 차주가 사고 장면 및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비식별조치를 마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을 사고 차량의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영상을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주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또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 모두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비식별조치 후에 열람하게 하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영상을 통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 그 밖의 사람, 차종 및 자동차 등록번호, 녹화일시, 위치정보 등이 기록되므로 직접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영상정보'라고 합니다.

주차 차량 사고의 피해자는 명백히 자신의 차량 피해를 밝혀 손해배상 등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 또한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받아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였거나 처리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는 것을 말함.

열람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지체없이 열람을 요구한 자가 본인 이거나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사유>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개인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자신이 열람한 영상을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 후 열람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 때에는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중에 보급된 비식별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열람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3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46조

의결례 차량번호
 자동차는 그 소유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차량의 소유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제5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와 함께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제7조 제6항)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보호위원회결정 제2019-16-260호)

판례 CCTV 열람 중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대법원 2022.1.14. 2018도18095)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양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 공 형태	기간
1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2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주제 II-5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공유의 적법성 여부

1. 질의 요지

입주민이 실명 또는 별칭으로 가입한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합니까?

질의 배경

입주민이 실명 또는 별칭으로 가입한 홈페이지에서 입주민의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한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업무를 목적으로 개설한 홈페이지 등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별도로 정하거나 정보주체인 입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민 상호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노출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³⁾의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자가 입주민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의 제공 및 각종 소식 알림 방송, 입주민 사이의 친목활동 등을 목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카페, 메타버스, 공개 SNS 등(아래에서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의 개설 주체 및 회원의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주택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다목).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범위, 회원 가입의 강제 유무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 등이 홈페이지 등을 개설·운영하고, 입주민인 회원의 이름과 ID, 전화번호,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정보가 저장되는 등 개인정보파일⁴⁾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받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목록화되고 입주민 등의 정보가 특정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목적으로 개설된 홈페이지 등에 입주민의 친목을 위한 메뉴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의 관리를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입주민 개인이 입주민과의 친목을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가운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3항). 따라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친목’이란 서로 친하여 화목한 것을 말하고, ‘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 사이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4호). 그 본질상 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친목단체가 될 수 없지만, 해당 영리단체 등 친목단체가 아닌 단체의 구성원도 단체 내에서는 자유롭게 친목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입주민과의 친목활동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계속 반복하여 업로드할 때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어 ‘개인정보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처리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주민이 자신의 일상 또는 추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활동은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초상권 또는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실명으로 가입한 홈페이지 등에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해당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또한, 입주민이 별칭(닉네임)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공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홈페이지 등의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 '개인정보의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리자는 이용자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문구로 삽입하여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고문구 (예시)〉

[회원님 잠깐만요!!!]

해당 게시판은 누구나 작성하고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이 게시판에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필요 시 상품안내 페이지의 담당자 메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 예약상에서도 담당자 연락처 확인 가능)

글쓰기
취소하기

출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2020.12, 53쪽.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규제 장치의 하나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해 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입주인 상호 간의 개인정보의 제공(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9조, 제58조, 제59조, 제7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판례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요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3. 10. 2015도8766)

판례 개인정보 유출의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례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란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市)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된다.(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2019노4259)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 및 제공의 비교〉

항목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제공	
			수집 목적 내	수집 목적 외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의 유출통지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개 념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언제든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함.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로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 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유 형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언제든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면 노출로 인정됨.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항목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제공	
			수집 목적 내	수집 목적 외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된 경우 -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 개인정보가 웹사이트의 게시물, 파일, 소스코드 및 링크(URL)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또는 외부 인력이 개인정보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파일을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경우 - 직원이 전자상거래회사에 개인정보를 매매한 경우 -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사용한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 교통법규위반 개인정보의 제공(보험업법 제176조) - 학원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설립자의 인적사항, 강사명단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제공(학원법 제6조)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별 요금액, 납부 또는 미납 사실 등 정보를 수집하여 요금 정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장부·서류의 제출을 명받아 제출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여 행정청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아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가 수사에 관하여 필요 사항의 보고를 요구받아 제공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
제재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75조 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75조 제2항 제1호

주제 II-6

온라인 화상회의 등에서의 얼굴, 음성, 발언 등 공유의 적법성 여부

1. 질의 요지

COVID-19가 창궐한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의 또는 수업 참석자의 얼굴, 음성, 발언 등이 상호 공유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 배경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수업에 참여한 사람의 얼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 제공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수업 중 참석자의 얼굴, 음성, 발언 등 개인정보가 상호 공유되는 것은 참석자 상호 간 자발적인 정보제공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2019년 11월 발생하여 2020년 1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 회의 또는 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화상으로 회의 또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들의 얼굴, 음성 등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석자 본인의 출석이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또는 수업 진행 중에는 참석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서로의 얼굴, 음성 등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법정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회의 또는 수업 주체가 회의 또는 수업 영상의 참석자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보유하는 때에는 참석자들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수업 전에 영상을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보유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 또는 수업 참석자가 다른 참석자의 얼굴 사진을 캡처하여 외모 또는 의견을 평가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때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얼굴이나 의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또는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얼굴 등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형법」 제244조에 따른 음화제조 등의 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영상을 회의 참석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그 밖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244조, 제307조, 제31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3조의2

주제 II-7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횟수의 적법성 여부

1. 질의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3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해,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연 1회만 고지하면 되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은 단서 규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1회 이상이 1회만 고지해도 되는 것인지 논란이 발생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연 1회 정보주체에게 알려 수집 출처 등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려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 출처 등을 알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되거나 제3자로부터 수집된 것인지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그렇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지사항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i)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그 제공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ii)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알리지 않고 해당 정보주체별로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ii)의 경우 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는 연 1회만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판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수집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임.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2014다235080).

판례 어린이집 내 보육일상이 담긴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뿐만 아니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정보주체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개 등 처리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같은 법 제4조). CCTV에 녹화·저장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 및 생활 영상은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로, 이 조항에 의해 열람 요청을 한 보호자의 영유아를 제외한 보육교사나 다른 영유아들은 자신들의 영상이 담긴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내 보육일상이 담긴 영상의 수집·보관·이용 측면에서 피촬영자인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CCTV 설치·관리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CCTV 영상 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하므로 이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주제 II-8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간 누수 분쟁 시 개인정보 제공

1. 질의 요지

관리사무소가 세대 간 분쟁해결 목적으로 분쟁조정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세대주 성명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 배경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간 누수분쟁 등의 다툼 해결을 위해 세대 내 입주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연락처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세대내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조정의 당사자에 관한 연락처 또는 세대주 성명을 제공하는 경우,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 해석 문제 발생

2. 답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분쟁신청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대측 정보주체의 연락처 또는 세대주 성명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3자 제공에 관한 적법한 법적 근거(법 제17조, 제18조 등)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공동주택의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4쪽 참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이 정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근거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73쪽 참조).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이하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이라 함)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관한 업무(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예: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 후보에게 정보주체인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됩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76쪽 참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의 일환으로 제공이 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1. 7. 15., 19번 참조).

이 사안을 살피건대, 관리사무소는 해당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 등에게 분쟁해결 목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조정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등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세대의 소유명의자 성명 등의 개인정보는 부동산등기부 발급 등을 통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주제 II-9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 게시

1. 질의 요지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를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 하는지?

질의 배경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수행하며, 입주민 등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승인 또는 확인(신청) 절차 징구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를 게시할 경우,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해석 필요

2. 답변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를 게시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그 적법한 처리 여부와 안전한 관리 정도에 따라, 적법하지 아니한 제3자 제공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는 가능하면 공동주택 게시판에 연명부를 게시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부득이 연명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입주민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필수 기재항목에 개인정보(예:성명, 연락처 등)가 기재되지 않도록 익명 또는 가명처리 방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부득이 연명부에 동호수 등과 함께 정보주체의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입주민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명부 상하단 또는 좌우측에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항목을 충분히 고지한 후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명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연명부 상하단 여백에 제공받는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남양주시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슬라이더’는 다중이용 시설 방문 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가려지도록 고안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슬라이더(예시)〉



또한 일반인의 입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공간이나, 비공개된 공간이지만 택배 배달업자와 같은 방문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연명부가 안전한 조치 없이 게시될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에 해당하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게시판에 연명부를 게시할 때,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익명 또는 가명처리 하는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 업무 효율을 위해 연명부 회람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방법과 절차로 진행 바랍니다.

- ① 보호조치 : 연명부 상단에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문구를 삽입
- ② 작성목적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를 기재
- ③ 정보주체 동의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칸 마련

○○○ 주민의견 수렴 연명부

- ※ 본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본 연명부는 우리 단지 도색 색상 의사결정에 반영할 목적임
- 본 연명부는 ○○○ 시·군·구에 우리 단지의 지원요구를 위해 제공 예정임

연번	성명	동 호수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3. 이유

이 사안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된 공개된 게시판에 연명부를 게시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모두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8쪽 참조).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포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8쪽 참조).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게시판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등의 주요 사실에 대한 입주민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를 때, 관리비 납부 등의 공지(제23조), 회계감사의 주요사항 공지(제26조), 감독기구의 감독 결과 통보 내용 공지(제93조), 공사의 중지예 관한 사항 공지(제94조) 등과 같이 입주민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65쪽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관리비 등의 부과명세(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및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각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또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통해 구체화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아파트 관리 업무 목적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민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공지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65쪽 참조).

한편, 연명부란 두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이름, 서명(사인)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공동주택에서 활용하는 연명부는 입주민 등의 이름, 동·호수 등의 정보가 기재되기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어 공개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침해’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된 공개된 게시판에 연명부를 게시하여, 입주민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특정한 행동을 요구한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등의 주요 사실에 대한 입주민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 사항은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공지가 가능합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65쪽, 98~101쪽 참조).

참고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개정된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아파트 관리비 항목별 산출내역·사용료 등(세대별 부과내역 제외)
- 회계감사 결과, 감독기구 통보 내용, 공사 중지에 관한 사항
-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기타 공지사항

따라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된 공개된 게시판에 연명부를 게시하여, 입주민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특정한 행동을 요구한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만약, 관리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 연명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한 후 명시적 동의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표시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요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중요한 표시내용에 해당⁵⁾)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한편, 다음과 같은 공지는 입주민 등의 알권리보다는 게시된 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에, 가능한 관리주체는 해당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글의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공지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66쪽 참조).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나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공지
- 아파트 관리비 연체 세대의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포함)의 세대별 부과내역
- 민원을 제기한 신고인의 신상정보(이름, 연락처, 동호수 등)나
- 입주카드 작성용 증빙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입주자의 정보(예: 동호수 등)
-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동, 호수, 차량번호 등) 등
- 입주민 등 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사항

만약 게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관리규약이 정한 특정 사안에 관한 것이고, 게시된 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범위 내에서 공개된 것이며, 게시판이 관련 입주민에 제만 접근 가능한 것이라면, 게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참고 관리규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의 정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이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은 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업무 매뉴얼도,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8쪽 참조)

5)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중요한 표시내용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요표시를 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판례 관리규약 관련 판례

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헌법재판소 2016. 11. 1. 선고 2016헌마900;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판결)

한편, 일반인의 입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공간이나, 비공개된 공간이지만 택배 배달업자와 같은 방문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연명부가 게시된 경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환경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는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등의 부주의 또는 자발적인 게시글로 게시자 및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① 보호조치 : 연명부 상단에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문구를 삽입
- ② 작성목적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를 기재
- ③ 정보주체 동의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칸 마련

○○○ 주민의견 수렴 연명부

※ 본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연명부는 우리 단지 도색 색상 의사결정에 반영할 목적임

본 연명부는 ○○○ 시·군·구에 우리 단지의 지원요구를 위해 제공 예정임

연번	성명	동 호수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17조 제1항 1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63조, 제64조, 제93조, 제94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4항

주제 II-10

참석자 현황 파악을 위한 출석표 회람

1. 질의 요지

참석자 현황파악을 위한 출석표(학교출석부, 통·리장 의견수렴 등)의 회람 등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학교의 수업이나 기관 등의 회의에서 참석자 현황파악을 위해 주최자 또는 주최 측이 출석표(학교출석부, 통·리장 의견수렴 등)를 공개된 공간에 비치해 두거나 회람시켜 참석자들로 하여금 출석상황 등을 표기토록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한 해석 필요

2. 답변

학교 등에서 참석자 현황파악을 위해 출석표 등을 공개된 공간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거나 회람시키는 행위는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 또는 노출되어 개인정보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등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출석부 등을 공개된 공간에 비치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비동의 적법근거가 필요하며, 교사 등 업무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관리적 조치(예: 회람 또는 공개를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 회람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도 상하단의 정보를 가리는 등의 안전한 관리적 조치 필요)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업무 효율을 위해 연명부 회람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방법과 절차로 진행 바랍니다.

① 보호조치 : 연명부 상단에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문구를 삽입

② 작성목적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를 기재

③ 정보주체 동의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칸 마련

○○○ 주민의견 수렴 연명부

※ 본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연명부는 우리 단지 도색 색상 의사결정에 반영할 목적임
본 연명부는 ○○○ 시·군·구에 우리 단지의 지원요구를 위해 제공 예정임

연번	성명	동 호수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3. 이유

참석자 및 수강생 등의 회원 이름 외에 출석·참석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는 식별 가능한 특정인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6항 제3호,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가이드」 2019. 12., 66쪽, 106쪽 참조). 또한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06쪽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참석자 현황파악을 위한 출석표(학교 출석부, 통·리장 의견수렴 등)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출석표에 출석 상황을 표기하여 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석표에 출석 상황을 표기하여 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적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제공할 경우, 이러한 적법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유출 등은 모두 개인정보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침해’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석자의 출석 현황 파악만을 위하여 출석 상황을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내부적인 수집·이용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출석명부를 공개된 공간에 비치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회람시키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가 이미 기재된 부분을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면 익명 또는 가명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남양주시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슬라이더’는 다중이용 시설 방문 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가려지도록 고안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슬라이더(예시)〉



참고 개인정보의 침해와 유출과 노출 비교

-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
- 유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예: 해킹, 고의유출, 업무과실, 불법매매 등)
- 노출: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인·조회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공개 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
 1. 홈페이지 운영·관리자 부주의에 의한 노출
 2.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3. 홈페이지 설계 및 개발 오류에 의한 노출
 4.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2차 노출
-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주제 II-11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블랙박스 촬영 영상 방송 제3자 제공 위반 여부

1. 질의 요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마스킹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마스킹 처리된 영상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블랙박스 영상을 마스킹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장소, 날짜 및 시간, 자동차 등록번호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유튜브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1호의2).

〈개인정보의 범위〉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 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따라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블랙박스 등의 영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촬영 장소, 날짜 및 시간, 자동차 등록번호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아프리카TV·카카오TV·네이버TV·팝콘TV·트위치TV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⁶⁾을 이용하여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⁷⁾’의 ‘크리에이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 제3호). 직접 촬영하거나 제보 받은 영상정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그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상정보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6)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 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 7) ‘인터넷개인방송’이란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 제1호)

판례 영상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요건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정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갑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 갑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 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갑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된 점을 고려하면 갑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이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갑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주제 II-12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건 해결용 CCTV 영상 제공

1. 질의 요지

스키장에서 스키어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사건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는 CCTV 영상을 증빙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간에 서로를 알고 있다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건 당사자 일방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스키장에서 스키어 간 충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원미상의 충돌 상대방을 찾기 위해 스키장 내에 설치된 주변 CCTV를 확인하려 하는 경우, 스키장 관리사무소가 충돌사고 당사자의 신원파악을 위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피해 당사자에게 확인토록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 해석 문제 발생(예: 스키장 내 CCTV 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영상 속 인물을 특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충돌 상대방이 특정되고, 만약 관리사무소가 비식별처리된 영상을 피해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고보고서에 충돌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고 난 후에야 사고 피해자는 충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게 됨. 즉, 충돌사건 당사자를 특정 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해석 필요)

2. 답변

해당 CCTV 영상은 그 영상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사건 당사자 간에 서로를 알고 있고, 조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 이러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CCTV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이유

해당 사안은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는 CCTV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제3자에게 제공 시 적절한 제공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개인정보 해당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를 때,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②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2조 제1호 나목)’이거나, ‘③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2조 제1호 다목)’를 말합니다.

해당사안은 가명정보와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개인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해당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정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며(개인식별정보 해당성 검토), 두 번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개인식별가능성 검토)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CCTV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키장 관리사무소에서 스키어 간 충돌 사고 발생 후 여러 경로의 추적을 통해 사건 당사자를 특정하고, 조서작성 등을 위해 양 당사자를 관리사무소로 불러, 서로 간에 충돌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CCTV영상과 다른 정보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가능정보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님.
 - 나. 개인정보는 i) 살아 있는 ii) 개인에 관한 iii) 정보로서 iv)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v)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vi)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다.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됨.
-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스키장에 설치된 해당 CCTV 영상은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더라도 관리사무소는 스키장 방문·결제·숙박 등 정보 또는 사고보고서 기재 인적사항 정보 등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1. 7. 38번 참조). 한편, 해당 영상을 제공 받은 자가 그 영상을 통해 사건 당사자를 특정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사건 상대방인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에, 관리사무소는 해당 영상의 제공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해당 CCTV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 시 적법한 제공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의 제공은 해당 CCTV영상정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된 것인지, 비공개된 장소에서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공방법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한 종류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시행령 제3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때,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 제25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표준지침 제2조 제11호). 만약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여기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83쪽 참조).

참고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의 예시

[공개된 장소 예시]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극장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 구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비공개된 장소 예시]

-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 학생, 교사 등 학교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지하철 내 수유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4., 2-3쪽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사업장 내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1쪽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스키장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하고, 수집 목적을 넘어서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키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여기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기에,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비동의 적법근거가 있어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판례 공개된 장소

-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고 개방되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특정상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상주·관리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 17290 판결).

참고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 근거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7.25. 2019도3215 참고).

따라서 스키장 관리사무소가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우선 스키장 내의 충돌사고로 정보주체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8조 등에 근거한 협조 요청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18조 제2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한편, 스키장 관리사무소는 영상 속 불특정 다수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영상에 비식별 조치를 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스키장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 본인 동의 없이 CCTV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스키장 관리사무소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제1항).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7호·제8호

III

개인정보의 파기

주제 III-1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시점의 적법성 여부

1. 질의 요지

쇼핑몰, 음식점 등 비대면으로 온라인 판매 또는 배달을 하는 업체에서 빈번히 물품(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시점은?

질의 배경

물품(음식) 주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전화번호, 주소)를 수집한 경우, 월 1~2회 이상 주문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시점이 문제가 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온라인으로 물품(음식) 주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및 대금결제, 그리고 물품(음식)의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1년 동안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파기 시점은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음식)을 최종적으로 주문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및 보존기간〉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그렇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물품(음식)의 주문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릅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물품(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해당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은 각각의 해당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해당 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물품(음식)을 주문받으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또한 위에서 설명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예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9조의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판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의 경과
-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이용·제공 목적의 달성
- 회원탈퇴, 제명, 계약관계 종료,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청산
- 대금 완제일이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

주제 III-2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에 따른 파기 또는 보관 방법의 적법성 여부

1. 질의 요지

문서를 파기·보관 할 때 보유목적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보유목적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보관 방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요건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웃돌 수는 없습니다. 민간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참고로 그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보유기간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린 보유기간만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고 있는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산정한 보유기간 동안만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유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령에서 보유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법령이 특별히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보유합니다.

- ⑥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보유기간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 보유기간 동안에만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11조, 제19조

판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하 통틀어 ‘법정 고지사항’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2014두2638).

I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주제 IV-1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시 법적 근거와 기준

1. 질의 요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사무공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장괴롭힘 금지 법령의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93조 제11호, 제11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 배경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 등 일정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행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 등에 따른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가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2. 답변

소속 근로자 이외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공간은 “비공개장소”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비공개장소인 사무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그렇지만, 회사자산의 도난 방지 및 시설 안전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무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직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⁸⁾의 회의에서 그 설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⁹⁾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 ① 개인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노사협의회 협의의 통해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영상자료를 활용하기로 한 경우
-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라면,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단독 또는 공동 설치·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든지 그 규율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개된 장소’는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로서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 승인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9)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속 근로자 이외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공간은 ‘비공개장소’이므로 그 사무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반드시 촬영장소 및 촬영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이 경우 비공개장소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촬영장소 및 촬영범위 내의 정보주체인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안내판을 설치하고,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자산에 대한 도난 방지나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영상정보처리기의 촬영범위에 근로자의 근무행태가 촬영되고 있다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하므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목적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 목적에 해당하여야만 수집 목적 내 이용·제공이 됩니다.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합니다.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영상자료를 활용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¹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자체감사기구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합니다(공공감사법 제19조).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사건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제3항). 그러므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를 위한 영상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개인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개인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또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거나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¹¹⁾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를 설립하여 ‘기관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 기관장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2조의2, 제5조 제1항 제5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더라도 괴롭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10)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11) 이를 위반하여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 제39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진정을 받아 장애인 근로자 괴롭힘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방법〉¹²⁾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1항·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를 위한 영상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개인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2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37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12) 제1호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3조 제1항 제2호·제3호).

판례 공개된 장소

-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고 개방되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특정상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상주·관리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 17290 판결).

주제 IV-2

서비스 제공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

1. 질의 요지

드론, 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집이 가능한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사업자가 드론, 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개인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사업자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¹³⁾를 이용하여 개인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9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수집·이용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1항).

1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촬영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1-1호) 제2조 제7호 나목).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요건〉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점, 정보주체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개인영상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기간, 개인영상정보 수집 범위, 수집 즉시 비식별조치의 이행,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개인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고지 및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영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제9호, 제6조 제1항

V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

주제 V-1

수집된 고유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 해당 여부

1. 질의 요지

수집된 고유식별정보가 목적 외 이용·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배경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수집·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적용해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됨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와는 달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관해 규정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는 특별조문에 해당하기에,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공공기관은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를 적용하여 고유식별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유식별번호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며, 동일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의 적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적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가 우선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3. 이유

고유식별정보는 원래 공익목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나 그 편리성 때문에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4조와 제24조의2를 통해 그 처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즉,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 운전면허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는 바(법 제24조 제1항, 영 제19조 제1항 각 호),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정보가 민간분야에서 DB매칭기 등으로 남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서입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66쪽 참조). 따라서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참고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항을 분리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67쪽 참조).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사회적 가치와 침해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를 통해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시행령 제19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 또는 법령의 명시적·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27쪽). 따라서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공공기관은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를 적용하여 고유식별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는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01쪽 참조).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운영 목적 작용 등 공공기관의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며, 동일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의 적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적용이 충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해서는 법 제24조의2가 특별 조문으로 우선 적용되어,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4조

주제 V-2

법 제2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4조의 관계

1. 질의 요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있어, 수범자별 적법근거는 무엇인지?(법 제2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4조과의 관계)

질의 배경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번호의 수집 시 적법근거(예:법률, 대통령령, 헌법기관의 규칙)를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적법근거로 하고 있지 않으나, 「신용정보법」 제34조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2 및 제15조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도 수집의 적법근거로 규정함에 따라, 업무 처리 시 혼선 발생

「신용정보법」 제34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도 수집의 적법 근거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법 제24조의2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 시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명확한 법 해석 필요

2. 답변

일반 상거래기업이 상거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간 적용 우선 순위에 대한 법률 해석상 이견이 존재하는바, 상거래정보는 통상적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고,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유

신용정보법 제34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독립적인 처리 근거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포함되며(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포함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일반 상거래기업이 상거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간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법률 해석상 이견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상거래정보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인 경우에만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모든 상거래정보는 「신용정보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지위가 사라지고, 신용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오히려 일반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거래정보는 통상적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고,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39쪽 참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VI

민감정보 처리 제한

주제 VI-1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1. 질의 요지

수집된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될 경우 법 제23조와 제18조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영 제18조 개정으로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정보로 처리되던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문제 발생

2. 답변

2020. 8.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가 민감정보의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감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제18조의 특칙으로서 제18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 또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27쪽, 162쪽).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조항과 같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하는 경우 민감정보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는 대신에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법 제23조에서 열거한 민감정보는 ① 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 제18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 8. 5.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민감정보 중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및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

참고 민감정보 처리 허용 사유의 구체적 의미¹⁴⁾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법정서식에 민감정보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아니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60쪽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적용이 배제되고 제18조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민감정보에 관하여 제18조와 제23조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18조 제2항 제3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도입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할 경우 민감정보에 대하여 다른 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VII

가명정보의 처리 등

주제 VII-1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법령 해석 문제

1. 질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등에 근거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가명처리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배경

법 제28조의2 제1항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협의의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정보)를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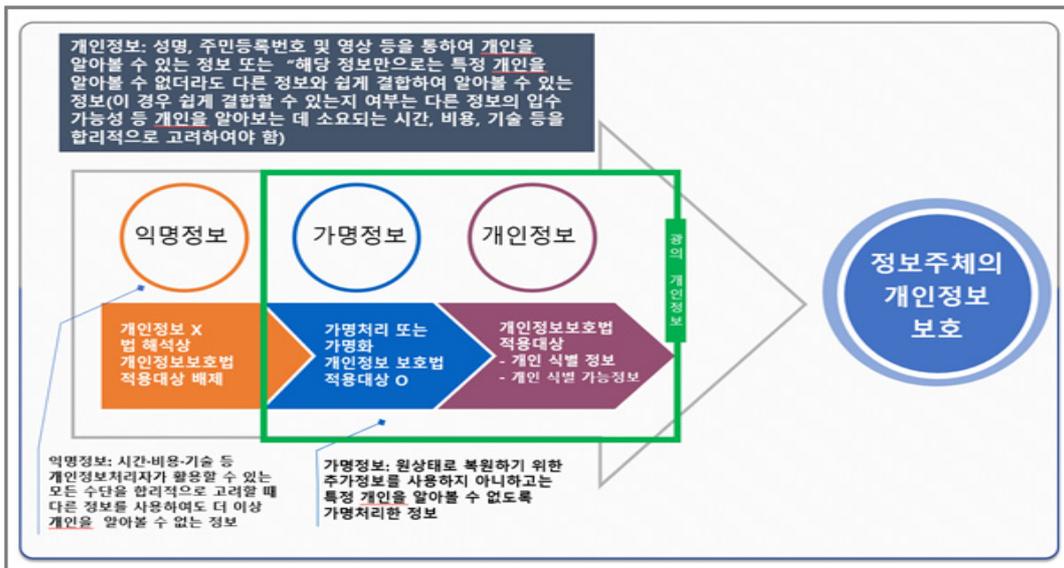
2. 답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를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제18조 제2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등에 근거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나, 가명정보 처리의 특례를 규정한 제3장 제3절(법 제28조의2~제28조의7)의 규정된 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누구든지 가명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법 제28조의5), 가명정보의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한 바에 따를 때(법 제28조의7), 가명정보의 경우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등에 근거해 수집한 개인정보와 구분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21쪽 참조).

3. 이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법률 제16930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여,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개인정보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와 유사개념 비교 구조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②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2조 제1호 나목)’이거나, ‘③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2조 제1호 다목)’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등에 근거해 수집한 개인정보(협의의 개인정보 -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수집 목적 범위 외의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 제18조 제2항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야, 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 된다 할 수 있으므로, 법 해석 방법 중 보정해석을 통해 살피건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21쪽 참조). 또한 그와 같이 가명처리된 정보 또한 원칙적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24쪽 참조). 다만,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처리되어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명정보의 처리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28조의5). 또한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외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은 명칭, 종류, 형태나 내용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때, 가명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22쪽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항은 가명정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가명정보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에 따라서 처리 목적의 범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가명정보 관련 내용(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48-249쪽 참조).

다만, 이 경우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예: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 테이블, 가명정보 생성시 사용한 암호 알고리즘, 가명정보 생성 시 사용한 솔트값 등)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법 제28조의7은 다음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이행이 가능한 12개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1항
- 제35조(개인정보 열람)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이는 법 제28조의5에서 누구든지 가명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에 기술한 12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개인을 알아보아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48-249쪽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법 제1조)을 인식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 처리주체별 적용 제외 조문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정보처리자 적용 제외 조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적용 제외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동조 제1의2호, 제28조의2-제28조의7

주제 VII-2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대상

1. 질의 요지

가명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신고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답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를 때,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분실·도난·유출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39조의4 제1항의 특례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제28조의7). 그러나 이 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출에 책임이 있는 주체(예: 가명정보처리자 또는 가명정보를 제공받은자 등)가 이를 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에 알림으로써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4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48쪽 참조).

3. 이유

법 해석상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 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에 알림으로써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바, 가명정보도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근거해, 개인정보에 포섭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있어, 제28조의7에서 유출 등의 처리와 관련해 제34조 제1항이 적용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34조 제1항(통지)과 관련된 조항 외에는 나머지 규정 등은 적용된다는 점에서,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나머지 조항은 가명정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가명정보에도 적용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 최소화 등의 조치의무(제34조 제2항) 및 신고의무(제34조 제3항)는 가명정보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48쪽 참조). 따라서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명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5일 이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영 제39조 제2항).

특히, 공공기관 또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최소화 등의 조치의무(제34조 제2항) 및 신고의무(제34조 제3항)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제1항).

참고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주체

- (신고 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의 상거래기업 및 법인
- (신고 시점) 최초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의 통지 및 신고의무에 관한 제39조의4 특례규정은 가명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8조의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 규모 이상(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일반조항이 적용되어 제3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48쪽 참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주제 VII-3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발생 여부(가명정보 처리 시 신고의무에 대한 법 제28조의7과 제39조의4 간의 해석 문제)

1. 질의 요지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의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배경

법 제28조의7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39조의4를 가명정보 처리 시 적용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제34조 제1항만을 적용 제외토록 하고 있어, 신고의무의 적용범위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차이가 발생함

2. 답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를 때,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법 해석상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기에,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에 알림으로써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유

가명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적용제외 조문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1항
 제35조(개인정보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이는 가명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가 정보(예: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가명정보 생성 시 사용한 암호 알고리즘, 가명정보 생성 시 사용한 솔트값 등)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법 제28조의7(적용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이행이 가능한 12개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과 원본정보로의 복원 가능성을 낮춰,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정보가 유출되어, 데이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명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의 침해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에 알림으로써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명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의무와 관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그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제28조의7에서 제39조의4 특례규정은 가명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제28조의7의 입법취지가 개인 식별가능성과 원본정보로의 복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것임을 감안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명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는 적용이 배제되나, 일정 규모 이상(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해 통지의무와 관련한 제39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명정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34조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므로(「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410쪽 참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3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 유출 시 피해 최소화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5일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제39조의4, 제34조

VII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주제 VIII-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질의 요지

개인정보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가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물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는 물리적 안전조치를 위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반출·입에 대한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 기록 관리가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문제 됨

2.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조저장매체란?〉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17호).

3.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다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세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용〉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제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유형 1, 유형 2, 유형 3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그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 ②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6호). 또한,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73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3조, 제11조

주제 VIII-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1. 질의 요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이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 배경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자신들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보안기술의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답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참조하고 규모·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 이상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개인정보 노출’이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언제든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된 경우,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면 노출에 해당하지만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다면 이것은 유출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야 하며, 권한 없는 제3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유출로 판단된다면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보호조치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제1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서비스의 특성에 맞도록 보호조치 기준 이상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 이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KISA,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57~58쪽 참조). 그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는 개별 서비스 및 홈페이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항목별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참조).

① 보안대책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 설계 시 개인정보 유·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험요소(예시)〉

- 검색엔진을 통한 유·노출
- 웹 취약점을 이용한 유·노출
- 게시판을 통한 유·노출
- 홈페이지 설계·구현 오류로 인한 유·노출 등

〈보안대책 (예시)〉

-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
- 인증·접근통제 등 보호조치 적용
- 오류 등 수정
-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② 보안기술 적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안기술 적용 (예시)〉

- 홈페이지 주소·소스코드·임시저장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사용 금지
- 홈페이지에 관리자 페이지의 주소 링크 생성 또는 노출 금지
- 엑셀 파일 등 숨기기 기능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금지
- SQL 삽입 등 시큐어 코딩 도입, 인증 우회 대비 조치

③ 운영 및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기술 적용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운영 및 관리 (예시)〉

- 보안대책 정기점검
- 게시글·첨부파일 등 정기점검 및 삭제
- 공격패턴·위험분석·침투 테스트 등 수행
- SQL Injection 취약점/CrossSiteScript 취약점/File Upload 및 Download 취약점/ZeroBoard 취약점/Directory Listing 취약점/URL 및 Parameter 변조 등 취약점 점검 및 개선

④ 홈페이지 개발자 개인정보 노출 예방수칙의 준수

홈페이지 개발자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개발자 개인정보 노출 예방수칙〉¹⁵⁾

1. 관리자페이지 접근제어 기능 적용	- 관리자페이지 접속은 SSL 기술을 이용하여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 - 관리자페이지는 접속이 필요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가된 IP로 제한하는 기능 적용 - 관리자페이지는 가급적 내부망에서만 연결되도록 구성
2. 게시글을 비공개와 공개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능 적용	- 게시글에 개인정보 포함 시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적용 - 비공개 글은 작성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적용
3. 접속경로(URL)에 개인정보 삭제	- 회원정보 페이지 개발 시 접속경로(URL)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사용 금지 - 소스코드 내에 회원 식별자로 주민등록번호 등 사용 금지
4. 홈페이지 설계 시 POST 방식 이용	- 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GET 방식 보다는 POST 방식을 사용
5. 소스코드 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서버정보 노출 사전점검	- 소스코드 내 개인정보 및 서버정보 포함여부 점검에러페이지 내 서버정보 포함여부 점검
6. 주기적인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 점검	-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 확장기능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가 리스팅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웹 서버의 URL, 도메인 이름, 디렉터리 경로 등을 활용하여 디렉터리 리스팅 여부 점검) - 디렉터리 리스팅 노출 방지 설정

⑤ 홈페이지 운영·관리자 개인정보노출 예방수칙의 준수

홈페이지 운영·관리자는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94-97쪽 참조.

〈홈페이지 운영·관리자 개인정보노출 예방수칙〉¹⁶⁾

1. 게시글/댓글 작성 시 개인정보 노출 주의 안내	- 웹사이트 이용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에 안내문구 및 팝업창 제공
2. 게시글 및 댓글 비공개 설정	- 게시글에 대한 비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민원 페이지나 각종 신청 관련 게시판은 비공개 설정
3.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및 게시글·댓글은 비식별 처리	- 이벤트 당첨, 합격자 공개 시 개인정보 마스킹
4. 파일 업로드 전 개인정보 유무 확인 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할 파일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 후 게시(업로드) - 작성된 첨부 문서에서 개인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후 게시(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셀 문서] 숨겨진 시트/행/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 • [엑셀 문서] (메모)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 • [엑셀 문서] 배경색과 같은 글자색으로 작성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 • [엑셀 문서] OLE 객체(그래프 등)는 더블클릭 후 원본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 • [엑셀 문서] 외부 파일 참조 기능 활용 여부 및 참조한 외부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 • [한글 문서] 한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보기 메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무 확인 •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에 개인정보 포함 유무 확인 - 엑셀, 한글 등 편집 가능한 문서의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하여 게시(업로드) -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정보 사전검색 후 게시
5.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점검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엔진(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확장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 주기적 점검 •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존재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 - 웹사이트 변동(통합, 개선 등)시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구분 값으로 개인정보 사용 여부 점검 • 전송 및 저장 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점검 • (개발 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 개발 • (개발 후) 시큐어 코딩 준수여부 점검 • 웹 취약점 점검

16)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98-105쪽 참조.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제3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판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성격 및 기준 위반행위의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등 판결).

주제 VIII-3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 문제

1. 질의 요지

네트워크 연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이 개인정보의 파기의무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답변

얼굴 실사 촬영을 하지 않고 개인식별성이 없는 열화상카메라 영상의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얼굴 실사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를 저장 또는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은 적법한 근거가 없을 경우 금지됩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경우,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저장·전송(네트워크 등)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저장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카메라 기종의 경우에는 수시로(1일 1회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열화상카메라 보호수칙』, 1-2쪽 참조)

3. 이유

원칙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영상을 수집·저장·관리 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얼굴을 촬영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굴 실사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 얼굴 실사 촬영을 하지 않는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등으로 개인식별성이 없다면 해당 영상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 실사 촬영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영상정보를 저장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저장·전송 기능을 비활성화 할 수 없는 카메라 기종의 경우 수시로(1일 1회 이상) 저장·전송된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합니다(보호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참조). 만약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얼굴영상을 처리하는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 제30조,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2). 아울러, 운영자 외 제3자가 카메라 또는 관리 프로그램 등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열화상카메라 보호수칙』, 2쪽 참조).

한편, 생체정보는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 정보’와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처리되는 일반적인 생체정보로 구성되는바,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사진을 인사 관리 목적으로 인사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얼굴 사진은 일반적인 개인 정보에 해당하나, 만약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메라에 촬영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한 정보와 인사관리 시스템에 이미 보관되어 있는 얼굴 사진을 특징정보 추출에 사용하여 특정인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정보 주체의 동의 등 별도의 법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는 생체인식정보에 적용되는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7쪽 참조).

참고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 비교

-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③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④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 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 신체적 특징 : 지문, 얼굴, 홍채·망막의 혈관 모양, 손바닥·손가락의 정맥 모양, 장문, 컷바퀴의 모양 등
 - 생리적 특징 : 뇌파, 심전도, 유전정보 등
 - 행동적 특징 : 음성, 필적, 걸음걸이, 자판입력 간격·속도 등
 - ②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 지문·홍채·얼굴 등에서 추출한 특징점 등을 이용(비교·대조)하여 특정 개인임을 확인
 - i) 인증 : 이용 권한이 있는 특정 개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생체정보를 기기 등에 저장된 정보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 ※ (예시) 지문을 입력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는 출입통제 시스템
 - ii) 식별 : 개인의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생체정보와 대조하여 여러 사람 중 특정개인을 구분하여 확인
 - ※ (예시) 기 등록된 여러 가족 구성원의 음성 중 지금 말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대답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 ③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④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사람의 연령·성별·감정 등의 상태를 확인 또는 분류하는 것
 - ※ (예시1) 안면인식을 통해 연령이나 성별 등을 추정하여 이용자를 분류하는 행위
 - ※ (예시2)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 인식해 눈·코·입 위치에 맞는 스티커를 얼굴위에 덧입히는 것
 - ④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정보를 수집·입력하고 해당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
- '생체인식정보':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

- 얼굴 사진(영상)의 경우
 - 생체인식정보 : 얼굴 사진(영상)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개인의 인증·식별 목적으로 출입통제(안면인식) 시스템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
 - 일반적인 생체정보 : 얼굴 사진(영상)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지만 특정 개인의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성별, 감정상태(웃는 모습, 화난 모습 등)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해당
- 음성의 경우
 - 생체인식정보 : AI 스피커에서 입력된 사람의 음성을 통해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응답하는 경우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
 - 일반적인 생체정보 : AI 스피커에서 입력된 사람의 음성을 통해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지만 특정 개인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화자의 감정상태(화난 목소리, 기쁜 목소리 등)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해당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9조

기획 및 집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은정 심사총괄담당관

유영관 심사총괄담당관 사무관

김지수 심사총괄담당관 주무관

이태형 심사총괄담당관 전문연구원(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정현 개인정보정책팀 팀장

안은진 개인정보정책팀 선임(변호사)

집필진

박영철 용인예술과학대 경찰행정과 교수

조수영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공 개 일 2022년 12월

공 개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 페이지 www.pipc.go.kr

상 담 문 의 ☎ 02-2100-3043
